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학생회칙

2023년 9월 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학문 탐구와 자주적 대학문화를 건설하여 생물공학과 발전과 자주적 삶의 실현과 진취적인 사회 발전 기여와 회원 상호간의 기초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원 및 공과대학 학생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생물공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 단, 휴학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단, 복학 예정자는 회원 자격을 가진다. (단, 휴학 학기의 종료 시부터 유효하다.)

제4조 (구성)

본회의 제2조(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집행부를 둔다.

제5조 (학생회실)

본회의 학생회실은 생물공학과 학우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본회의 집행부가 학생회실 관리의 주체가 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회원 모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회의 사업 계획, 본회의 재정, 그 밖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학생회칙 및 규정의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제2조(목적)의 실현할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활동에 대하여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학생총회

제7조 (지위 및 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기구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의장)

- 1) 본 회의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 2) 본 회의 부의장은 부학생회장이 되며, 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부의장이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 3)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 4) 학생총회 의장, 부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 부의장에게 의결권 부여한다.)

제9조 (권한)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총회는 본 회 운영 전반 및 회원 전체의 중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의결한다.
- 2)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권한을 갖는다.

제10조 (소집)

본 회의 학생총회는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 혹은 학생총회의 의장인 학생회장 소집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1조 (개회 및 의결)

학생총회는 회원의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탄핵 소추의 건의 관한 의결은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12조 (지위)

- 1) 본 회의 학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생물공학과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의장, 집행부의 장, 공과대학 운영위원, 공학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 2) 본 회의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단, 부학생회장도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 이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3)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 학생회장단이 선출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3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 각 항에 명시된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회장은 제2조(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학생총회, 집행부를 소집, 주재한다.
- 3) 회칙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4) 집행부 각 부장 및 학생대표를 추천 및 임명하여 회원들에게 공개 공고한다.
- 5)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6) 학생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단, 업무 만료 시에는 기구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 7)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4조 (임기)

- 1) 건국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당선된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동계 방학 시작일로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 2) 매년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1항에서 규정하는 임기 시작 전까지 '당선인' 신분이며, 해당 신분의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진행하여 임기 동안 학생대표자로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 3) 1항에서 규정하는 임기동안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자는 '당선인'의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다.

제4장 집행부

제15조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6조 (구성)

- 1) 집행부는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 2) 집행부의 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이 부재 및 궐위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집행한다.(단, 학생총회에서 의결 결과에 따라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 2) 본 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결산을 편성하여 공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집행부의 자율적 활동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학년대표

제18조 (지위)

- 1) 학년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본 회의 각 학년을 대표한다.
- 2) 학년대표는 집행부에 소속되어 학생회장을 보좌한다.
- 3) 학년대표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중 1인이 업무를 대신한다.

제19조 (구성)

- 1)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원 및 공과대학 학생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생물공학과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 2) 각 학년대표는 재학 중인 학기 수로 산출된 학년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임기)

학년대표의 임기는 1학기 학생총회를 시작일로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제6장 비상대책위원회

제21조 (지위 및 구성)

- 1)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본회의 집행부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 2)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가 무산된 후 7일 이내에 선출한다.
- 3)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비상대책위원 중 1인을 재정담당자로 구성한다.)

제22조 (비상대책위원장)

- 1) 전년도 학생회장이 위임한 당해 연도 재학 중인 자로 선출한다. (단, 당해 연도에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 2)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3)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하며, 비상대책위원 유고 및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집행할 수 있다.

- 1)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그 권한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행한다.

- 2) 학생회장이 선출되기 이전까지 사업의 집행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3)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생물공학과와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상위기구인 공과대학 학생회에 보고 후 자체적으로 학생총회 개최 및 비상대책위원회 소집을 할 수 있다.

제24조 (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 종료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재·보궐 선거에서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었을 시에는 선거 종료일로 한다.)

제25조 (선출 공고)

선출 공고는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 즉시하고 선출 과정, 선출 결과(선출자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과 동아리 및 소모임

제26조 (목적)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학우들의 학문 소양 및 다양한 자치활동의 요구를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구성)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학우 전체를 구성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13인 이상으로 한다. (단, 소모임의 경우 구성인원 제한이 없다.)

제28조 (규정)

과 동아리의 신설은 다음 각 항에 명시된 조항을 따른다. (단, 소모임의 경우 제28조에 관해 제한이 없다.)

- 1) 과 동아리 신설 시에는 학생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승인한 학생회장은 7일 이내로 집행부에 보고한다.
- 2) 동아리 회원의 자격은 회칙 3조 (회원자격)에 의거한다. (단, 휴학 및 졸업생의 경우 동아리 회장의 승인을 거쳐 활동만 가능하며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사항은 회원들에게 7일 이내로 보고한다.)
- 3) 학년 비율이 50%가 초과되지 않아야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4)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내규에 따른다.

제8장 재정

제29조 (재정)

- 1)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금액으로 한다.

- 2) 본 회의 학생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3) 본 회의 학생회비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집행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측정한다.
- 4) 본 회의 학생회비는 신입학 후 신입생에 대상으로 8학기분의 학생회비를 일괄 납부 받으며, 그 시기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미납부자 및 전편입생의 경우, 추가 납부 기한을 두어, 학년별 집행비율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

제30조 (예·결산 및 감사)

- 1) 예산안은 학생회장이 공과대학 학생대표자 회의에 보고한다.
- 2) 본 회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며, 예산안에 의거하여 각 행사 종료 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3) 예·결산안 양식과 공고, 감사 방법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15장 감사회칙에 의거한다.

제9장 부칙

제31조 (효력)

본 회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32조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총회에서 해석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공과대학 학생회칙에 의거한다.)